

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- ☐ 일 시 : 2025. 4.
- ☐ 장 소 :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
- ☐ 안 건 :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물 순환 안전국

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 드림

□ 예비비 사용 내역 : 1건, 3,972백만원

○ 사용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증감액		변경후 예산액	사용 일자
정책	단위	세부	목	세목		감	증		
일반예산 (예비비)	예비비	예비비	예비비	일반 예비비	93,944	△3,972	-	89,972	'25.01.31.
재무활동	보전지출	유상매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	배상금 등	배상금 등	-	-	3,972	3,972	

※ 예비비 사용금액(3,972백만원) = 판결금 3,020백만원 + 이자 952백만원

○ 예비비 사용 사유

- '서울 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' 무상귀속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
민사소송(대법원 2024다277847, 원고 : 서울주택도시공사) 패소에 따라 판결금 지급

<소 송 개 요>

- ◆ 사 건 명 : 대법원 2024다277847 부당이득금
- ◆ 당 사 자 :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 / 피고 서울특별시
- ◆ 사건내용 : 원고는 '서울 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' 시행을 위하여 2018. 2. 27. 피고와 서울 강남구 자곡동 56-2 외 5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위 토지들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29조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들의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함
- ◆ 추진경위
 - ❶ 서울시(해당부서 : 치수안전과, 도로계획과)를 상대로 소 제기(소송가액 : 3,020백만원) : '23.12.13.
 - ❷ 1심 판결선고(원고 승) : '24.01.19. ❸ 피고 항소 제기 : '24.02.07.
 - ❹ 2심 판결선고(원고 승) : '24.07.17. ❺ 피고 상고 제기 : '24.08.22.
 - ❻ 3심 심리불속행기각(원고 승) : '24.11.28. ❼ 판결금 및 이자(3,972백만원) 지급 : '25.01.31.